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4-50호
2024. 8. 7.(수)

| | |
|---|-----------|
| 선 | 기관(부서)의 장 |
| 람 | |

차 례

공 고(2)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공고 제2024-815호) 1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공고 제2024-816호) 4

| | | | | | | | | | |
|-----|--|--|--|--|--|--|--|--|--|
| 공 략 |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15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대덕구 세정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열 략
 - 기 간: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장 소: 대덕구 세정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2024.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대덕구 세정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대덕구 세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4.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24. 6. 1. 기준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 2인의 검증으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 세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2. 11.>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의견 제출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
| | 지목 | 대지면적(㎡) |
| | 용도지역 | 건물연면적(㎡) |
| | 사용승인연도 | 층수 |
| | 주건물구조 | 주건물용도 |
| 의견제출 내용 | 열람가격 | 의견가격 |
| | 의견제출 사유 | 원 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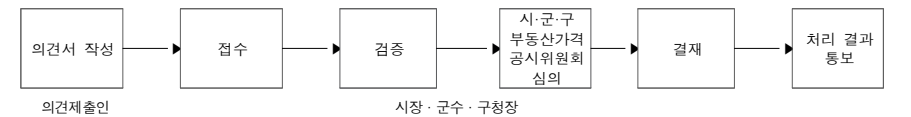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끝.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열람

- 기간: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장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용: 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간: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제출사항: 2024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

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4년 9월 26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2024. 6.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 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 2024. 8. 7. ~ 8. 26.(20일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2024.9.26.~10.2.)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2024.9.26.~10.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의견 제출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상 공동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
| | 명칭(단지명) | |
| | 동명 | 호명 |
| 의견제출 내용 | 열람가격 | 원 의견가격 원 |
| | 의견제출사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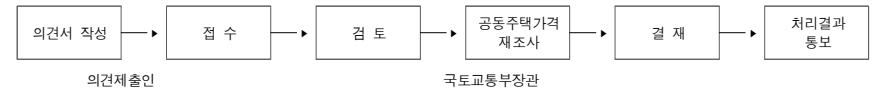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 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취하서

| | | | | |
|--|----------|--|-------------------|--|
| 의견 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 대상 공동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 | |
| | 명칭 | | | |
| | 동호수 | | | |
| 취하 사유 | | | | |
| <p>위 의견제출인은 _____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취하인 (인 또는 서명)</p> <p>국토교통부장관 귀중</p> | | | | |

끝.